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재홍 환경보건위원회 고문변호사 발언요지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탄소중립을 위한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등 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의무라고 판단하여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히하였고, 의무위반의 심사기준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와 그 심사정도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에 형식적인 감축목표 설정은 물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수단을 나열하는 선언적 조치만으로는 국제법적 책임문제를 피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엄청나 정책위의장 발언문

불과 3주 전인 4월 6일, 전북 지역 들녘에 무려 8mm에 달하는 우박이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봄을 맞아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자라나던 생명들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찢기고 꺾였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올해 봄, 들녘의 사과와 배, 복숭아꽃이 개화 시기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한꺼번에 피어버렸습니다. 차례로 피어야 할 꽃들이 이상 고온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만개하면서, 우리는 늦은 봄서리 한 번에 올해 과수 농사 전체가 한날한시에 전멸할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농민들은 이처럼 숨통을 조이는 기후재난의 한복판에 완전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펄펄 끓는 폭염에 과일이 화상을 입고, 가을 수확기에는 하늘이 뚝린 듯 쏟아지는 폭우와 잦은 장마로 애써 지은 1년 농사가 통째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당장 재작년에는 이상고온이 불러온 버벌구가 들녘을 하얗게 말라 죽게 했고, 작년에는 깨씨무늬병과 도열병까지 논을 덮치며 2년 연속 벼농사마저 초토화되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묵묵히 땅을 일구던 농업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농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뉴스에 나오는 북극곰의 눈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 밥줄이 끊기고 파산에 직면하는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지고, 결국 이 나라 국민 모두의 식량 주권이 무너집니다.

국민의 생존과 밥상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지금, 재난을 막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묻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발표했습니다. 재판소의 선언은 명확했습니다. 기후 행동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시혜가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마땅히 저야 할 절대적인 '법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지금 유엔총회에서는 이 역사적인 ICJ의 판결을 전면 지지하고, 각국의 실질적인 기후 행동을 강제할 후속 결의안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단순한 선언문이 아닙니다. 파괴되는 기후 현실을 직시하고, 전 세계가 다 함께 기후정의 실현하자는 구체적인 생존의 이행 경로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농민들과 연대 단체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결의안 협상 과정에 방관자로 남지 말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둘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당당하게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십시오.

셋째, 결의안 표결 시 반드시 '찬성표'를 던져 헌법과 국제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외교부 조현 장관님.

들녘에서 타들어 가는 작물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농민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후위기 대응은 화려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의 생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기후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피스 채혜진 전략법무 전문위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전략법무를 담당하는 채혜진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해 재판소 역사상 다섯 번째로 만장일치의 권고적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5명의 재판관 전원이 기후위기 대응이 정치적 선호의 문제가 아닌 국제법상의 실질적 의무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생산·소비·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국제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권고적 의견이 나오기까지 저희 그린피스 역시 태평양 지역공동체의 목소리를 모아 국제사회에 전달해왔기 때문에 권고적 의견에 대한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ICJ의 권고적 의견이 선언된 후에도 국제사회의 현실은 저희 희망과 같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COP30에서 각국은 ICJ가 확립한 법적, 그리고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발언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다자 협상 테이블에서 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차단하려는 우려스러운 방해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민사회는 변화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네덜란드 법원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네덜란드령인 카리브해 보네어 섬 주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인 그린피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ICJ의 권고적 의견을 참조했습니다. “권고적 의견”이 각국 국내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실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바누아투가 주도하고 있는 유엔총회의 ICJ 후속 결의안 채택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결의안은 ICJ의 “권고적 의견”이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국제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구체적인 경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맞서 법의 이름으로 연대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입니다. 결의안 채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정희 집행위원 발언문

지난 3년간 지구는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가파른 기온상승에 따라 기후재난의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전 세계 기후재난으로 8,78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대부분은 기후위기 책임이 크지 않은 글로벌 남반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속화하는 기온상승과 이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파리협정의 합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는 빠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산업국의 개도국 기후행동에 대한 재정과 기술, 역량강화 지원, 되돌릴 수 없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미국 행정부의 파리협정과 UN기구 탈퇴,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 등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제 정치무대에서 후 순위가 되고 있으며, 기후행동의 논의와 이행을 위한 UN 다자주의 체제의 기후협상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지난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총회는 의제마다 각국 정부간 벌어지고 있는 이견 차이와 분열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반대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합의가 불발되었고, 글로벌 적응목표도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습니다. 28차 기후총회에서 당사국들이 설립에 합의한 ‘손실과 피해기금’은 최소 연간 1천억 달러의 기금이 필요하나, 정치적 관심이 줄어들면서, 산업국이 약속한 7억 9천만 달러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억 9천 7백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후행동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누아투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자문적 권고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UN에 제출했습니다. 바누아투정부의 결의안 초안은 정체 위기에 있는 글로벌 기후행동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1.5°C 목표 유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기후난민 보호, 국제피해 등록부 설립과 배상 제공 등”을 담은 결의안 초안은 자발성과 비구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파리협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피해 유발 국가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적 권고의견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2023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를 요청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정부 또한 찬성표를 던진 것처럼,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기를 바랍니다. 이야말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고, 위기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기후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후리더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입니다.